

4-17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

2012. 6.25. 제정

2017.11.29. 개정

주무부서 : 교무처 교무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임용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활동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을 말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이 있고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연구기관, 민간산업체 등 동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초·중등학교 및 대학 근무 기간은 산업체 경력 제외)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9.>

제4조(임용기간)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9.>

②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는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본 규정의 심사항목 및 심사양식에 따라서 심사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본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및 비전임 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을 경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19.>

② 국고로 지원되는 특정 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제청한다. <신설 2015.2.19.>

제6조(심사항목)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자에 대한 필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를 [별지 1]에 심사위원장이 합산 평균하여 작성한다(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 경력 및 자질: 40점
2. 산학협력관련 실적: 40점
3. 산학협력활동계획서: 20점

제7조(경력 및 자질) ① 경력사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지 2] 양식에 따라서 평가한다.

1. 총 산업체 근무 기간
2. 모집 전공 관련 근무 기간
3. 산업체 직위/직책 및 근무 부서
4. 학위 관련 경력 및 잠재력

② <삭제 2015.2.19.>

③ 경력사항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기준과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각 위원의 배점은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④ 경력사항 평가에서 위원 전원이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산학협력활동 실적) 산학협력실적은 지원일 현재까지 최근 10년간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3]의 양식에 따라서 평가한다.

제9조(산학협력활동 계획서) 산학협력활동 계획서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별지 2]의 양식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기준과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각 위원의 배점은 정수로 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기타

제10조(의무) ①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매 학기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계약에 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매 학기 3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사업으로 임용된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2.19.>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직임용은 제한하며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처우)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력 산정 방식 및 초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연봉은 임용계약에 따른다.

③ 기타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르되 전임교원의 경우 별정제 전임교원에 준한다.

제12조(재임용 및 승진)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은 2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9.>

②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최소기준은 [별표 1] 업적평가표의 평가항목별 점수 총점이 500점이고, 평가기간 중 담당과목 강의평가 변환표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개인별 계약기간 및 강화된 재임용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2.19.>

③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승진기준은 교원임용규정을 따르되, 연구업적은 [별표 1] 업적평가표상의 산학협력 연구업적으로 100%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2.19.>

④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은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상 연구전담교수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9.>

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임용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9.>

제13조(업적평가)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별표 1] 업적평가표에 따라서 별도로 실시하며 업적평가 결과는 재임용시 반영한다. <개정 2015.2.19.>

보칙

제14조(기타) 산학협력단 소속 비전임교원은 동 규정을 준용하되 제6조 내지 제13조까지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2.19.>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1.29.>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심사총괄표(위원장용)

대학(원)

학과(전공)

연번	성명	경력 및 자질 (40점)	산학협력관련 실적(40점)	산학협력활동 계획서(20점)	합계 (100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1 . . .

심사위원장:

(인)

[별지 2]

경력 및 자질/산학협력활동 계획서 심사표(위원용)

대학(원)		학과(전공)	
성명			

구분	세부항목	배점	점수
경력 및 자질	총 산업체 근무 기간	10	
	모집 전공 관련 근무 기간	10	
	산업체 직위/직책 및 근무 부서	10	
	학위관련 경력 및 잠재력	10	
	합계		
▶ 평가의견: ☐ 탁월(32점~40점), ☐ 우수(24점~31점), ☐ 보통(16점~23점), ☐ 미흡(15점 이하) ▶ 기준 및 평가사유: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학협력 활동계획	20	
▶ 평가의견: ☐ 탁월(16점~20점), ☐ 우수(12점~15점), ☐ 보통(6점~11점), ☐ 미흡(5점 이하) ▶ 기준 및 평가사유:		

201 . . .

심사위원:

(인)

[별지 3]

산학협력활동 실적 심사표(위원용)

대학(원)		학과(전공)	
성명			

구분	세부항목	배점	항목별 점수	합계
산학협력 연구활동	특허	국제등록 건당 10점, 국내등록 건당 2점		
	기술이전	1,000만원당 2점		
	신기술, 신제품 인증	국제 건당 2점 국내 건당 1점		
	연구과제 수탁	2,000만원당 1점		
	관련 논문	SCI 편당 10점		
산학협력 교육,봉사활동 (10점)	관련 특강	건당 1점		
	기술경영지도, 기술자문	건당 1점		
총점				

※ 산학협력활동 실적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며, 산학협력 교육+봉사활동 실적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논문의 인정비율은 교원임용규정상 학술지별 인정기준 및 비율을 적용함

201 . . .

심사위원:

(인)

[별지 4]

산학협력활동계획서(지원자용)

대학(원)		학과(전공)	
성명			

구분	내용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학협력 봉사활동	

업적평가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최대인정기준
산학 협력 업적	외부연구비 ¹⁾		간접비 100만원	10	최대 200점 인정
	기술료		본부지분 100만원	10	최대 200점 인정
	특허 ²⁾	국제	건당	200	최대 200점 인정
		국내	건당	40	최대 100점 인정
	특성화 및 취창업 교과목 개발을 통한 전문서적 및 단행본 ³⁾		건당	100	최대 100점 인정
	현장실습 ⁴⁾		건당(1명 기준)	3	최대 150점 인정
	취업연계 ⁵⁾		건당(1명 기준)	10	최대 150점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운영 ⁶⁾		건당	30	최대 100점 인정
	교원창업 ⁷⁾		건당	50~100	최대 100점 인정
	신기술, 신제품 인증 ⁸⁾		건당	10	최대 100점 인정
논문 업적	등재지 ⁹⁾		편당(단독저자 기준)	100	

¹⁾ 외부연구비 : 산업체 자문을 포함하여 인정

²⁾ 국내, 국제 특허 : 임용일 이후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국제특허 : 1특허 다국가 등록 시 1건만 인정

- 국내특허 : 분할출원시 원출원 기준으로 적용, 발명자 지분 반영

³⁾ 특성화 및 취창업 교과목 개발을 통한 전문서적 및 단행본 : 교원업적평가지행세칙상의 기준 적용

⁴⁾ 현장실습 : 기업연계, 현장실습 지도, 결과보고 등 전체를 지원하고 사업주무부서에서 인정하는 건에 한하여 반영

⁵⁾ 취업연계 : 기업연계, 취업지도, 컨설팅 등 취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고, 해당 취업학생 및 사업주무부서에서 인정하는 건에 한하여 반영

⁶⁾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운영 : 설치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연구과제 수주시 인정

⁷⁾ 교원 창업 : 창업 후 1년 이상 운영(대학 신고 교원 창업 : 50점, 자회사 편입 : 100점)

⁸⁾ 신기술, 신제품 인증 :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

⁹⁾ 등재지 : 상기 배점은 인문, 사회계열 등재지 단독저자 기준이며, 개별 학술지 논문의 계열별 인정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상의 저자 수에 따른 공동저자 환산 비율 및 학술지의 계열별 인정비율에 따라 환산함